

합천군 박물관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4. 10.

제 출 자 : 합천군수

1. 제안이유

- 제17대 대선공약 및 경상남도 문화예술과-19013(2012.10.16)호 “공립박물관 무료관람제 실시 협조요청” 관련하여 무료관람제 이행으로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,
- 개인정보보호법 (2013. 8. 6)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지양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박물관 관람료 무료입장에 따른 관람료 징수대상을 삭제함. (안 제3조)
- “관람시간 및 매표시간”을 “관람시간”으로 함(안 제6조)
- “관람료 징수 등”을 “관람료”로 하고 “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”로 개정함. (안 제7조)
- 그 밖에 조례의 내용중 관람료 징수, 관람료 면제, 매표 및 수표, 관람권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삭제함.(안 제8조, 9조, 10조)
- “편의시설 등”에 “모유수유실”을 추가함.(안 제17조 1항)
-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9조 1항)

- 관람료 징수관련 별표, 별지 서식을 삭제함(별표1, 2, 별지1, 4, 5호)
- 별지 유물복제신청(허가)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
“생년월일 및 성별”구분 항목 추가 함. (별지2, 3호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합천군 박물관관리·운영조례, 모자보건법, 여성발전기본법,
개인정보보호법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
-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(2) 입법예고(2014. 8. 11 ~ 9. 1)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
 - (가) 개선의견 : 모유수유실 설치 및 위원회구성, 성별에 관한 사항
 - (나) 반영결과 : 반영하였음

합천군 박물관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합천군 박물관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 제목 중 “(관람 및 매표시간)”을 “(관람시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“관람시간 및 매표시간”을 “관람시간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중 “(관람료 징수 등)”을 “(관람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12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, 같은 조 제5항 중 “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”을 “「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복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6조 제1항 본문 중 “수장품에 대하여 망실.”을 “수장품을 잃어버리거나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장품의 망실.”을 “수장품을 잃어버리거나”로 한다.

제17조 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모유수유실

제18조 본문 중 “수 집”을 “수집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중 “위원의 30%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.”를 “특정 성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23조 본문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별표 제1호서식, 별표 제2호서식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고,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, 성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“일반인” 이라 함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제4호(군인), 제5호(청소년), 제6호(어린이) 이외의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4. <u>“군인” 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을 말한다.</u></p> <p>5. <u>“청소년” 이라 함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·대학생을 말한다.</u></p> <p>6. <u>“어린이” 이라 함은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7. <u>“단체” 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</u></p>	<p>제3조(정의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삭 제></p> <p>4. <삭 제></p> <p>5. <삭 제></p> <p>6. <삭 제></p> <p>7. 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8. <u>“관람료”라 함은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자(이하 “관람자”라 한다)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</u></p> <p>제6조(<u>관람 및 대표시간</u>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박물관의 대표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.</u></p> <p>③ 군수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<u>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7조(<u>관람료 징수 등</u>)</p> <p>① <u>관람료의 징수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.</u></p> <p>② <u>관람료는 [별표2]에 의한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.</u></p>	<p>8. <삭 제></p> <p>제6조(<u>관람시간</u>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삭 제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제1항----- -----관람시간----- -----</p> <p>제7조(<u>관람료</u>)</p> <p>① <삭 제></p> <p>② <u>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<u>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</u></p> <p>2. <u>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경우</u></p> <p>④ <u>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[별지 제1호서식]에 의거 관람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, 다음날까지 합천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8조 (관람료의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</u></p> <p>1. <u>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</u></p> <p>2. <u>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</u></p> <p>3. <u>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</u></p>	<p>③ <삭 제></p> <p>④ <삭 제></p> <p>제8조 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4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/u></p> <p><u>5. 국·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</u></p> <p><u>6.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 <p><u>제9조 (매표 및 수표)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접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,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수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관람권) ① 관람권은 일반인과 군인·청소년·어린이로 구분한다.</u></p>	<p>제9조 <삭 제></p> <p>제10조 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<u>단체관람을 할 경우 사전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단체관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제5호서식의 관람권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</u></p>	
<p>제11조(관람금지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11조----- 어느 하나에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행위제한)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<u>각호의</u>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(행위제한) ①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수장품 복제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④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의 50%로 감면</p>	<p>제14조(수장품 복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 ----- ----, 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----- -----</p>

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⑤ 기타 수장품 복제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을 준용한다.

제16조(수장품의 관리) ① 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망실·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수장품의 망실·훼손 또는 도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7조(편의시설 등)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3. <신설>
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 (생략)

제18조(박물관운영위원회의 설치)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수장품의 수집·전시 등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합천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「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복제 규칙」-----.

제16조(수장품의 관리) ① -----
수장품을 잃어버리거나 -----

-----.

② ----- 수장품을 잃어버리거나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편의시설 등) ① -----

-----각 호-----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모유수유실
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-----

----- 수집-----

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

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30%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.

제23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
-----.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

①-----

-----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23조-----
-----어느 하나에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【별표 1】

<단위 : 원>

구 분	개 인		단 체	
	일반인	군인 · 청소년 · 어린이	일반인	군인 · 청소년 · 어린이
관람료	700	500	500	300

【별표 2】

관 랐 권

<앞면>

<p>년. 월. 일 일련번호 관람권(보관용) 일반인 개인 1명 700원 합 천 군 수</p>	<p>년. 월. 일 일련번호 관람권(영수증) 일반인 개인 1명 700원 합 천 군 수</p>	<p>박물관 전경사진</p>
--	--	-----------------

※규격 : 가로170mm×세로65mm

<뒷면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람안내</p> <p>■ 관람시간 · 09:00 ~ 18:00 ▶ 매표시간 : 관람시간 종료1시간전까지</p> <p>■ 요금 · 개인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일반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700원</td> </tr> <tr> <td>군인·청소년·어린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00원</td> </tr> </table> <p>· 단체(20인 이상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일반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00원</td> </tr> <tr> <td>군인·청소년·어린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00원</td> </tr> </table> <p>■ 무료 : 65세이상 노인, 6세이하, 장애인</p> <p>■ 휴관일 : 1월1일, 설날·추석날 매주 월요일</p>	일반인	700원	군인·청소년·어린이	500원	일반인	500원	군인·청소년·어린이	300원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nformation</p> <p>■ opening hours · 9 a.m. ~ 6 p.m.</p> <p>■ Admission fee(each person) · Single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dults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₩700</td> </tr> <tr> <td>a military man & Teenagers(13~18years) Children(7~12years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₩500</td> </tr> </table> <p>· Group(over 20persons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dults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₩500</td> </tr> <tr> <td>a military man & Teenagers(13~18years) Children(7~12years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₩300</td> </tr> </table> <p>■ Free : Above 65, Under 6, Handicapped</p> <p>■ Closed on January 1st, New Year's day, Ch'usök and every Monday</p>	Adults	₩700	a military man & Teenagers(13~18years) Children(7~12years)	₩500	Adults	₩500	a military man & Teenagers(13~18years) Children(7~12years)	₩300	
일반인	700원																	
군인·청소년·어린이	500원																	
일반인	500원																	
군인·청소년·어린이	300원																	
Adults	₩700																	
a military man & Teenagers(13~18years) Children(7~12years)	₩500																	
Adults	₩500																	
a military man & Teenagers(13~18years) Children(7~12years)	₩300																	

관 람 료 징 수 대 장

<단위 : 명/원>

구 분		당 일			누 계	
		인 원	관람료	금 액	인 원	금 액
일반인	계					
	개 인					
	단 체					
군인·청소 년·어린이	계					
	개 인					
	단 체					
면제	계					
	6세이하 어린이					
	노 인					
	기 타					

【별지 제2호 서식】 - 개정전

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				처리기간	
				4일	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		
유물번호	유물명칭	유물수량	복제수량	비고	
				*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	
복제일시	년 월 일		복제인원		
복제목적					
복제내역					
복제장비					
기 타					
참고사항					
<p>위와 같이 귀 군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복제함에 있어서 귀 군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합천군수 귀하</p>					
구비서류				수수료	

【별지 제2호 서식】 - 개정후

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					처리기간	
					4일	
신청인	성 명		<u>생년월일</u>		<u>성 별</u>	
	주 소					
유물번호	유물명칭	유물수량	복제수량	비고		
				*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		
복제일시	년 월 일		복제인원			
복제목적						
복제내역						
복제장비						
기 타						
참고사항						
<p>위와 같이 귀 군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복제함에 있어서 귀 군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합천군수 귀하</p>						
구비서류				수수료		

【별지 제3호 서식】 - 개정전

		허가번호			
유 물 복 제 허 가 서					
신청인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	
유물번호	유물명칭	유물수량	복제수량	*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	
복제일시	년 월 일		복제인원		
복제목적					
복제내역					
복제장비					
* 허가조건					
1.					
2.					
3.					
4.					
<p>년 월 일 귀하께서 신청한 복제 ()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천 군 수 (인)</p>					

【별지 제3호 서식】 - 개정후

				허가번호	
유 물 복 제 허 가 서					
신청인	성 명		<u>생년월일</u>		<u>성 별</u>
	주 소				
유물번호	유물명칭	유물수량	복제수량	비고	
				*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	
복제일시	년 월 일		복제인원		
복제목적					
복제내역					
복제장비					
* 허가조건					
1.					
2.					
3.					
4.					
<p>년 월 일 귀하께서 신청한 복제 ()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천 군 수 (인)</p>					

◆ 참고자료

□ 경남도내 공립박물관 관람료 현황 : 34개소(무료20, 유료14)

구분	박물관 명칭	관람료	향후 계획
경상남도	경상남도립미술관	상설 무료 자체 전시만 유료	
창 원 시	성산패총유물 전시관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창원시립진해박물관	무료 유료(500원) 무료	최소한의 유지관리비 (단체 사전협조 시 무료)
진 주 시	국립진주박물관 경상남도산림박물관 진주시청동기문화박물관	무료 유료(1,500원) 유료(1,000원)	(수목원 입장료) 하반기 검토 예정
통 영 시	통영 향토역사관	무료	
김 해 시	국립김해민속박물관 김해봉황동유적패총단면전시관 대성동고분박물관	무료 무료 무료	
밀 양 시	밀양시립박물관	유료(1,000원)	최소한의 유지관리비
거 제 시	거제어촌민속전시관(제1관) 조선해양문화관(제2관)	유료(통합 3,000원) 유료	
양 산 시	양산시립박물관	무료 기획전만 유료	
의 령 군	의령박물관	무료	
함 안 군	함안박물관	무료	
창 념 군	창녕박물관 박진전쟁기념관	무료 무료	2014. 9. 12일자
고 성 군	고성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 고성탈박물관	유료(1,000원) 유료(3,000원) 유료(2,000원)	무료화 검토 중 (3개 박물관 무료화 애로)
남 해 군	남해유배문학관	유료(2,000원)	군민문화가 있는 날 무료
하 동 군	하동농업전통문화전시관 하동차문화전시관 지리산역사관	무료 무료 무료	
산 청 군	산청박물관 남명전시관 지리산빨치산도별전시관 목면시배유지전시관 산청한의학박물관	무료 무료 유료(1,000원) 유료(1,000원) 유료(2,000원)	
함 양 군	함양박물관	무료	
거 창 군	거창박물관	무료	
합 천 군	합천박물관	유료(700원)	

협조사항 요약

○ 공립 박물관 무료관람 확대 실시

- 제17대 대선공약(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),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 (문화향유권의 확대/ 전국 국공립박물관 무료관람제 실시)
-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무료관람 확대
- 경상남도 문화예술과-1903(2012. 10. 16)호

○ '문화가 있는 날' 시행 동참

-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수립 발표
-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전시 무료 관람, 야간개방 등
- 공립 문화시설 의무적 참여, 민간 문화시설 자율 참여 권고
-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-515(2014. 2. 10)호 및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-2943(2014. 2. 11)호

문화예술진흥법 제2조	『문화가 있는 날』 적용 대상 시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연시설 : 공연장, 영화상영관, 야외음악당 ■ 전시시설 : 박물관, 미술관, 화랑, 조각공원 ■ 도서시설 : 도서관, 문고 ■ 지역문화복지시설 : 문화의 집, 복지회관, 문화체육센터, 청소년활동시설 ■ 문화 보급전수 시설 : 지방문화원, 국악원, 전수회관 ■ 종합시설 : 공연, 전시, 도서 등 복합 ■ 그 밖의 문화시설 : 문체부장관 고시 	<p>일반 국민 대상 문화 관람활동 등이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문화시설(도서관 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박물관(역사, 고고, 인류, 민속, 예술, 동물, 식물, 광물, 과학, 기술, 산업 등 포함) ■ 미술관(서화, 조각, 공예, 건축, 사진 등) ■ 공연장(문예회관 포함) ■ 영화관 ■ 문화재 시설 ■ 도서관

□ 여성발전 기본법

제15조(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8.13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8.13.>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,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3.8.13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8.13.>[전문개정 2008.6.13.]

<붙임>

「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」 검토의견

※ 담당자 :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김호진 (055-239-0166)

합천군 주민복지과 임은정 (055-930-3282)

제(개) 정 안	검 토 의 견	
	수정안	검토사유
1. 해당조항 : 제17조(편의시설 등)제1항4호<신설>	1. 해당조항 : 제17조(편의시설 등)제1항4호 ⇒ 모유수유실	<p>1.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기업체, 학교, 지하철역사 등 모유수유실 설치 및 관련 용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, 이와 더불어 몇몇 지자체)역시 「모유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이나 이용시설,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(모유수유실·착유실, 귀저기갈이대 등)의 설치를 지정 권장하여 운영하고 있음.</p> <p>따라서 대중문화시설 이자 공공이용시설인 박물관을 이용하는 영·유아 및 모의 모성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모유수유실을 편의시설에 포함시켜 설치·운영하는 것이 필요함.</p> <p>※ 참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3(모유시설의 설치등)제1항 <p>⇒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</p>

1)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(2013)
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(2012)

<p>2. 해당조항 : 제19조(위원회 의 구성)제1항 ⇒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위원의 30%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3. 별지 제2호서식 ‘유물복제 허가신청서’의 신청인</p>	<p>2. 해당조항 : 제19조(위원회 의 구성)제1항 ⇒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3. 별지 제2호서식 ‘유물복제 허가신청서’에 신청인의 성 별 구분항목 신설 예시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08 1003 983 1093"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신청인</td> <td>성명</td> <td></td> <td>생년월일</td> <td>성별</td> </tr> <tr> <td>주소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/table>	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성별	주소				<p>2.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「여성발전 기 본법」 제15조(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)제1항에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’고 강제규정을 명시하고 있음</p> <p>3. 실태파악 및 향후 대책 마 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을 제안함</p> <p>※ 참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3조(여 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)제3항 ⇒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. • 「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 제15조(분석평가 정보지원 체계의 구축 및 정보공개 등)제1항 ⇒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전문성 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영역별 성 별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·보급하여야 한다.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성별						
	주소										

광주광역시 복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(2012)
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(2011) 외 11개소